

# 보도자료

- 제공일 : 2004. 11. 9.
- 제공자 : 농림부 가축방역과
- 과 장 : 김 창 섭
- 서기관 : 양 흥 구
- 전 화 : 02-500-1942

이 자료는 2004년 11월 1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 제목 : 위생 닭고기 생산을 위해 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 강화키로

□ 농림부는 살모넬라성 질병인 추백리·가금티프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양계농가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.

○ 추백리·가금티프스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닭에서 설사와 폐사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,

○ 종계장에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면 부화달걀을 통하여 전염(卵繼代 傳染)되며 감염된 병아리가 일반 양계장에 공급되어 질병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인 악순환을 하게 된다.

※ 추백리(雛白痢) : 3주령 이내 어린 병아리에서 백색의 설사와 폐사(100%까지)를 유발

※ 가금티프스 : 모든 일령의 닭에서 설사와 폐사(50%까지)를 유발

□ 농림부는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종계장 관련 고시 등 방역 규정의 통합제정 및 사료공정서 개정과 추백리·가금티프스가 발생한 종계장의 도태장려금 지급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추백리·가금티프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감염닭 도태시 보상이 없음에 따라 농가에서 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,

- 추백리·가금티프스 양성종계군의 도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태장려금(1수당 5,000원)을 지급기로 하고,

※ 도태장려금 : 도태 권고에 따라 일정기한내 도축장으로 도태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

- 도태권고 등 방역조치 미이행 종계장·부화장은 축산전문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방역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기로 하였으며,

- 일반 종계장은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서, 원종계장은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전담관리를 하도록 역할분담을 하였으며, 종계용 배합사료에 살모넬라 미검출 기준을 적용기로 하였다.

- 농림부는 동 대책의 추진에 따른 종계·부화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'05.3.1까지 유예기간을 부여기로 하고,

- 검사기관의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 및 양성종계군 이동 제한·도태 등 방역조치 적용에 앞서 종계장 자율적으로 자가검사 및 자율도태를 실시토록 당부하였다.

- 금번 대책은 종계장·부화장의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산란계·육계 농장으로의 병아리 공급 이전에 관리를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건강한 병아리 공급기반 구축과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기대된다.

※ 붙임 :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방역관리 강화대책(요약)

## <추진배경>

■ 종계장·부화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산란계·육계농장의 건강한 병아리 공급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

- 종계장(부화장)의 종란(병아리)을 통해 산란계·육계농장으로 전파되는 난계대(卵繼代) 전염병인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 최소화

■ 냉장닭고기·삼계탕 등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

### I. 현 황

□ 종계업·부화업 현황('04.11월 현재 등록기준)

- 종계장 업체수 202개소(4,839천수)로 '99.1.29 등록제에서 신고제 전환이후 증가하였으나 등록제 시행후 감소

- ('98) 205개소 → ('02) 243 → ('03) 253 → ('04) 202

- 부화장 업체수 169개소('03 부화실적 965백만수)로 등록제 실시에 따라 감소

- ('02) 199개소 → ('03) 191 → ('04) 169

□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현황

| 구 분   | '00            | '01          | '02            | '03            | '04.9말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추백리   | -              | 20천수<br>(4건) | 2<br>(5)       | 1<br>(2)       | -           |
| 가금티프스 | 725천수<br>(79건) | 735<br>(121) | 1,835<br>(144) | 1,585<br>(150) | 248<br>(33) |

※ 추백리(雛白痢) : 3주령 이내 어린 병아리에서 살모넬라균(*Salmonella pullorum*)의 감염으로(주로 난계대 전염) 백색의 설사와 폐사를 유발하는 전염병('40년 최초발생)

※ 가금티프스 : 모든 일령의 닭에서 살모넬라균(*Salmonella gallinarum*)의 감염으로(난계대 및 수평전파) 패혈증과 폐사를 유발하는 전염병('92년 최초발생)

## II. 방역관리 강화대책

### 목 표

#### ■ 종계장·부화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등 질병관리 강화

- 난계대 질병인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 최소화
- 종계장·부화장의 위생관리 강화로 건강한 초생추 생산, 공급

#### ■ 농가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통한 농장간 차단방역 철저

- 건강한 종란 또는 초생추 입식으로 질병청정 농장 지향
- 소독시설 설치, 소독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실시



### 중점추진방향

#### ■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방역관리 강화

- 검사기관, 검사방법 및 검사시기 개선으로 검진효율성 향상
- 살처분 보상범위 확대 및 도태장려금 지급 추진

#### ■ 부화장 위생방역관리 강화

- 부화장과 종계장을 연계한 공동방역체계 구축
- 차단방역, 종란 및 부화기 소독, 거래기록 보존 등 제반 방역사항 준수

#### ■ 닭 질병예방 및 차단방역 교육·홍보

- 닭 질병 전국순회교육 등 예방관리교육 실시
- 농가 자율방역 홍보비디오 활용 교육·홍보

**① “종계장·부화장방역관리요령” 제정,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**

- 종계장·부화장의 위생관리와 주요 닭전염병(추백리·가금티프스·뉴캐슬병 등) 방역에 관한 사항을 제정, 총괄관리 운용
- 종계장 관련규정을 통폐합 및 부화장 및 가금티프스 방역 신설

**② 종계장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제도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**

| 구 분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질병  | 추백리                    | 추백리 + 가금티프스                      |
| 자가검사  | 의무검사                   | 자율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확인검사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검사시기 | -120일령 이상<br>(매년 1회이상) | -120일령~산란개시전<br>(1년내에 추가검사)      |
| -검사기관 | -시·도 가축방역기관            | -원종계 : 검역원<br>-일반종계 : 시·도 가축방역기관 |
| -검사시료 | -사육수수의 2~3% 수준         | -계사당 30수이상<br>-양성계사 재검사시 300수이상  |
| -검사방법 | -평판응집반응                | -평판응집반응<br>-ELISA(양성개체 확인검사용)    |

\* 검사기관의 확인검사 개시전 종계장의 자율검사 및 자율도태를 추진하기 위해 '05.3.1까지 유예기간 부여

○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농장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

- 분양 종계장·부화장 추적조사 및 해당농장 방역규정 위반 처분

**③ 추백리·가금티프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 추진**

- 지급대상 : 확인검사결과 양성종계군과 함께 사육된 종계로서 닭도축장으로 출하한 물량
- 지급금액 : 수당 5,000원

#### **[4] 닭 질병 방역 홍보·교육**

- 종계장·부화장 경영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지원(매년 1회이상)
  - 협조 :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·양계협회·계육협회 등
- 양계농가가 많은 정착농원 방역교육은 한빛복지협회 주관으로 별도 실시(매년 1회)

#### **[5]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방역조치 미이행 및 우수 종계장·부화장 축산전문지 공표(축산신문 및 월간양계·양계연구 등 자체발간지)**

- 대 상
  - 양성종계군의 동거종계에 대한 도태 또는 종계 사용금지 조치 등 미이행 종계장
  -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농장 추적조사를 통해 감염종계 유래 병아리 분양 종계장 또는 소독 등 방역관리 부실 부화장
- 공표절차 : 양성종계군 판정 또는 추적조사 결과 → 농림부 보고 → 방역조치사항 확인 → 전문지 게재(분기별)

#### **[6] 종계장·부화장의 예방접종·소독실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**

- 뉴캐슬병 예방접종(의무), 가금티프스 예방접종(금지) 등 이행여부 및 소독실태 현지조사 강화
- 검역원·양계협회 합동 현지조사 및 위반농장 행정처분(과태료) 강화

#### **[7] 종계용 배합사료의 미생물 오염방지**

- 배합사료원료 관리 및 생산단계별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위생 관리 철저
- 종계용 배합사료는 펠렛 또는 크럼블화, 가루사료는 열처리 후 공급토록 하여 오염미생물 제거, 완제품 살모넬라 검사 실시
  - 사료공정서 개정시 종계사료에 살모넬라 미검출 규정 신설

#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절차

## 자가검사

- 종계장 소유자는 추백리·가금티프스 자가검사 및 양성계 살처분을 자율적으로 실시(\* 추백리·가금티프스 예방접종 금지)

## 확인검사

- 검사기관 : 원종계장(검역원), 일반종계장(시·도 가축방역기관)
- 검사시기 : 120일령~산란개시전(1년내에 추가검사 실시)
- 검사기준 : 계사당 30수이상
- 검사방법 : 1차(평판응집반응) → 양성개체에 대해 2차검사(ELISA)

### 양성율 ≥ 10%

- 양성계 살처분
- 양성계군 판정

### 0% < 양성율 < 10%

- 양성계 살처분
- 1주일내 재검사(그 동안 종계로 사용금지)
- 검사기준 : 계사당 300수이상
- 검사방법 : 1차(평판응집반응) → 양성개체에 대해 2차검사(ELISA)

### 양성율 ≥ 2%

- 양성계 살처분
- 양성계군

### 양성율 < 2%

- 양성계 살처분
- 의양성계군

### 양성율 0%

- 음성계군

- 이동제한·도태(1개월이내)권고
- 종계로 사용금지(종란부화 금지)

- 시장·군수 감독하에 종계로 사용